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89호(2016.7.29)와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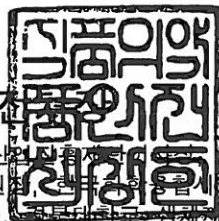
2. 「의료기기법」 제17조제2항에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기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테스트기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 동 사실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6-132호)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한국과학기술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재활공학연구소장), 동국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장,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재료기기시험평가센터장,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장, ㈜디티앤시 대표이사, ㈜스탠다드뱅크 대표이사, ㈜케이씨티엘 대표이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제약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의공협회장,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장,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이사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한의사협회장,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대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에스지에스(주) 대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이사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주무관 손혜경 사무관 이정애 의료기기정책 전결 2016. 12. 7. 과장 신준수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9772 (2016. 12. 7.) 접수

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푸르 / www.mfds.go.kr  
미르빌딩 4층

전화번호 043-230-0419 팩스번호 043-230-0400 / mild1763@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